

#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538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3년 2월 24일

제 안 자 : 도시계획균형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용어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‘종합계획’을 ‘기본계획’으로 수정하고,
-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조례안의 목적달성을 위해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하나로 ‘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’을 명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‘종합계획’을 ‘기본계획’으로 수정하고 ‘할 수 있다’를 ‘하여야 한다’로 수정함 (안 제5조제2항 수정).
- 위원회 구성에 ‘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’을 신설함(안 제8조제2항제1호 신설).

#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안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호부터 제4호는 제정안 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.

- ② 1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b>종합계획</b>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<b>할 수 있다.</b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1.~3. (생략)</p>	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b>기본계획</b>----- -----<b>하</b> <b>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8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<b>1.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</b></p> <p>2~4. (제정안 1:2:3과 같음)</p>